

## 공유부 배당의 논변 구조와 기본소득론의 사회상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은 공유부 共有副의 평등한 배당이다. 여기에서 ‘공유부 wealth of commons’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공유지’ 또는 ‘공유’라는 개념이 특정한 소유 형태로 이해될 수 있고 ‘공동소유 common ownership’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유부’라는 개념은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공동의 것으로 돌려야 할 수익을 뜻한다. 결국 공유부 배당이란 공동의 것으로 돌려야 할 수익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복지국가의 이전 지출 transfer payment과 분명히 구별되는 기본소득의 고유한 원리를 표현한다. 20세기 복지국가의 복지 급여는 ‘기여의 원리’에 따른 사회보험과 ‘필요의 원리’에

따른 공공부조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이 빈곤 예방의 기능을 가진다면 사회부조는 사후적인 빈곤 구제 수단이다. 이와 비교할 때 기본소득은 개별적 기여와 무관하게 또한 필요에 대한 심사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된다. 이와 같은 현금 이전(cash transfer)의 정당성은 어느 누구의 노동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공유부는 사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이미 18세기 말 프랑스대혁명기의 사상가인 토마스 페인(Thomas Paine)과 토마스 스펜스(Thomas Spence)에게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싹텄고, 오늘날에는 디지털 자본주의, 인지 자본주의, 인공지능 등 현대적 배경 속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토지, 생태환경, 축적된 지식, 금융, 네트워크 등 공유재의 확대에 관한 현대적인 논의는 자신의 노동에 근거한 소득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전유된 공유부를 정치공동체가 환수하여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 곧 기본소득 배당에 대해 충분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공유부에 대해서는 누구나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의 법적 형식에 의해 사적으로 전유되는 공유부를 환수하여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 것은 정치공동체의 의무가 된다.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유부를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은 조세다. 그런데 공유부 배당을 위한 조세는 국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전액을 평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

충용을 위한 일반 조세와 구별된다.\*

공유부 배당론의 의의는 단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문제를 넘어선다. 즉 공유부 배당의 관점은 20세기 복지국가의 이전 지출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사고할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전혀 다른 원리에 기초해 있다.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를 대체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수준의 기본소득이 도입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필요성은 매우 줄어들 것이고 전면적인 대체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낮은 수준이나 생계 수준 정도의 기본소득 도입으로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대체되지 않을 것이며 대체되어야 할 어떠한 합목적성도 없다. 도입 단계에서 기본소득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병립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혼합 복지 모델에서 기본소득,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각각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의 원리, 기여의 원리, 필요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금 급여로서 서로 다른 문제 영역에 대한 복합적인 해결 방식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공유부 배당의 관점에서 기본소득과 20세기 복지국가의 이전 지출들의 차별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공유부 배당론의 논변 구조를 사유재산권 및 시장 노동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본소득론의 사회상을 그려본다.

---

\* 공유부 배당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에서는 재정 환상이 제거된다. 거둔 액수 그대로  $1/n$ 로 분배되게 때문에 누구나 손익에 대해 명료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오직 재분배만을 위한 조세라는 점에서 목적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준조세로서 재분배 기여금 성격을 갖는다.

## I.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 1. 완전고용은 20세기 복지국가의 전제 조건

20세기 복지국가는 소득의 일차적 원천은 자신의 노동이어야 하며 국가공동체의 지원은 보충적일 뿐이라는 사고방식, 곧 시장 노동 우선성에 근거해 있다. 이와 같은 노동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공유부의 무조건적 배당이란 이질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현대 복지국가는 완전고용이라는 전제에 기초해 있다.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1942)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완전고용은 변수가 아닌 상수였다.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체계의 목표는 사후적 빈민 구제가 아니라 결핍(want) 또는 빈곤(poverty)의 예방이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매우 기이하게도 베버리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아도 이러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베버리지는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잃거나 은퇴 등으로 소득 능력의 결핍이 생길 때 소득을 보장해 주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출생, 사망, 결혼과 같은 예외적 상황들에서 발생하는 욕구들(needs)을 충족시켜 주는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한다면, 결핍과 빈곤이 충분히 예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 배당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베버리지가 완전고용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완전고용 상태라면 강제적 사회보험제도(scheme of compulsory social insurance)만 도입해

도 실업 또는 퇴직에 대비할 수 있어서 빈곤은 충분히 예방되고, 이에 따라 빈곤에 빠져서 자산 심사와 결부된 부조(means-tested assistance)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수는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베버리지 체계에서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제도였으며, 반면에 사후적으로 빈곤 구제 기능을 하는 공공부조는 보충적인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회보장체계가 거꾸로 완전고용 경제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베버리지의 제안이 경제적 수요 관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완전고용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한정된 서구 자본주의의 예외적인 상황에 불과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실업이 점차 대량화되면서 사회보험체계를 통한 빈곤 예방(poverty prevention)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복지체제의 목표도 빈곤 구제(poverty relief)로 이동하여 자산 심사와 결합된 선별적 소득보장제도가 중심적이게 되었다.

## 2. 기여의 원리와 필요의 원리

20세기 복지국가의 급여 원리는 ‘기여의 원리’와 ‘필요의 원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원리 모두 시장 노동과의

---

\* 이러한 해석은 T. Fitzpatrick (1999), p. 22를 따랐다.

\*\* T. Fitzpatrick (1999), 같은 면. Jose Harris(1997)는 케인스가 베버리지의 제안에 얼마나 열광적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 Fitzpatrick (1999), p. 19, pp. 46~47.

연관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원리다. 사회보험은 노동소득에서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제도다. 노동소득의 기여를 전제로 하기에 사회보험의 작동 원리는 기여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 일자리를 전제로 하는 반면에, 공공부조는 노동능력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또는 일자리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험에 봉착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의 원리에 따른 급여이며, 필요 여부에 대한 심사, 즉 자산 심사는 이러한 원리의 당연한 결과다. 완전고용을 전제로 할 때 기여의 원리는 복지체계의 기본적 구성 원리이며 필요의 원리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보충적 원리다. 하지만 완전고용의 전제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자산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공공부조와 각종 선별적인 사회수당은 오늘날의 복지국가의 중심 제도가 되어 버렸다.

### 3. 시민권의 원리와 공유부 배당의 원리

피츠패트릭(Fitzpatrick, 1999, p. 46~47)은 기본소득을 국적 또는 거주 조건만 갖추면 시장 노동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점에서 ‘시민권의 원리(principle of citizenship)’에 입각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기본소득이 시장 노동을 통한 기여를 따지지 않으며 자산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보험 수급권이나 공공부조도 시민의 권리

이며, 기본소득과 비교할 때 단지 무조건적 권리(unconditional rights)가 아니라 조건적 권리(conditional rights)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공공부조도 권리적 성격을 가진다. 빈곤에 빠져서 공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부조 요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조에 권리적 성격이 있다고 해도, 공공부조 요구권과 기본소득은 성격이 전혀 다른 권리다. 공공부조 요구권은 필요에 따른 조건적 권리인 반면에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권리다. 공유자로서 공유부의 배당을 요구할 권리에는 공유자라는 보편적 자격 이외에 자산이나 일자리 등 일체의 조건이 부과될 수 없다.

설령 다른 조건 없이 직접적으로 시민권으로부터 파생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원리를 ‘시민권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유형화에는 시민권에서 직접적으로 파생하는 현금 이전이 왜 정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에 기본소득을 공유부 배당으로 유형화할 때의 장점은 그와 같은 정당성이 잘 드러난다. 거기에는 토지, 생태환경, 지식, 사회적 협동 등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며 모두의 것이며, 그렇기에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commons에서 비롯된 부는 정치공동체가 환수하여 다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몫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정의의 관점’이 드러나 있다.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의 원리는 시민 또는 사회구성원은 예외 없이 누구나 공유부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이며, 시민과 공유자의 동일성 속에서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의 원리는 동시에 ‘시민권의 원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리 속에는

기본소득의 특징인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 4. 혼합 복지 모델과 복합 소득

기여의 원리와 필요의 원리만으로 이루어진 20세기 복지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체계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밝혔다. 그런데 완전고용의 가정은 이미 무너졌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더욱 희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일자리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측은 선제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는 일은 이 글의 주요 목표가 아니다. 이 글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복지체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만 한정하여 논의하도록 하자.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생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복지국가의 목표로 삼고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을 기본소득, 사회보험, 공공부조라고 생각하자. 이와 같은 혼합 복지 모델에서 기본소득은 공적 이전소득의 기본 값<sup>default</sup>이다. 이 기본 값의 수준이 실업자에게 생계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높을 경우에도 상병수당이나 장애수당처럼 필요의 원리에 따른 수당제도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이 기본 값이 다소 낮다면 선별적 이전소득의 규모와 종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필요의 원리와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의 원리는 분명 서로 구별되는 원리다. 하지만 두 가지 원리는 상호 배제적이지도 않



고 양자택일적일 이유도 없다.

공유부 배당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적인 총소득은 두 가지 계열을 가진 복합 소득income mix으로 구성된다. 한 계열에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곧 시장소득과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소득 등 사적 이전소득이 놓인다. 다른 한 계열에는 공유부 배당소득과 사회수당 등 여타 공적 이전소득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복합 소득의 두 요소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며 개별적인 시장소득의 크기와 구체적인 조세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공유부 배당소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소득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두 가지 구성 요소는 노동 성과에 따른 분배와 평등한 배당이라는 서로 다른 논리 위에서 있지만 총소득에서 어떤 부분이 항상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을 수 없다. 단지 모든 소득에서 공유부 배당소득이 구성 부분이 된다는 점만 달라질 뿐이며, 성과에 따른 분배 원칙은 이러한 한계점 안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시장소득의 원천은 사유재산권 및 노동이며, 이러한 소득 원천에 대해서는 노동 성과나 자산소유에 따른 불평등이 허용된다. 하지만 공유부로부터 비롯되는 소득의 분배에는 평등한 배당equal share의 원리가 관철된다. 공유자 자격은 개별적 기여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평등한 배당이 가장 적합한 분배 방식이다.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의 원리가 공적 이전소득의 기본적 원칙인 반면에,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별적 차등의 원리는 공유부 배당만으로 생계 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장애 등으로 더 많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원칙이다.

## II. 공유부 배당의 논변 구조

복합 소득을 구성하는 두 부분인 시장소득과 공유부 배당은 독립적이고 병렬적이다. 하지만 공유부를 배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소득의 환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유가 규범적 우선성을 가진다고도 말할 수 있다. 즉 사유재산 제도는 사회적 사실성(facticity)의 영역인 반면에, 공유는 규범성(normativity)의 영역에서 우선성(priority)을 지닌다. 공유에 규범적 우선성이 부여된다는 것은 자산소유나 노동 성과에 따른 소득분배에 대해 이차적인 규제 원리가 도입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유부 배당은 이미 이루어진 시장소득의 분배를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재분배다. 하지만 시장소득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는 소득 최저선이 사전에(ex ante) 부여된다는 점에서 공유부 배당은 일종의 선(先)분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유의 규범적 우선성에 함축된 논변 구조를 사유재산제도 및 노동소득과의 관계 속에서 — 특히 공유부 배당론을 최초로 전개한 토마스 페인과 토마스 스펜스의 논변 체계를 통해 — 살펴본다.

## 1.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기와 공유부 배당

소득분배의 규제 원리로서의 공유 개념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충돌하지 않는다. 공유부의 환수와 평등한 배당은 사유재산권이라는 법적 권원title에 입각하여 공유부를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만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또한 공유부 배당은 시장소득의 기여에 따른 분배라는 원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기여한 몫은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듯이 공유의 산물은 모두에게 나눠 줘야 한다. 개별적 소득의 많은 부분이 공유재에서 나왔다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sum cuique’ 분배 정의의 회복의 관점에서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은 정당하다.

토마스 페인은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1796년)에서 역사상 최초로 공유부를 모두에게 배당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다. 페인의 계획은 상속재산에 10%의 상속세를 부과하여 국가 기금National Fund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21세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15파운드를 일회적으로 지급하고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매년 10파운드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상속세를 재원으로 사회적 지분 급여와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페인은 이러한 현금 이전이 일체의 자산 심사 없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두에게 공유부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자산 심사나 필요에 대한 심사가 야기하는 “불쾌한 구분을 방지하는 위험”만이 아니라 원래 모두에게 속한

“자연적 유산 대신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토지 소유권 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자연적 유산의 박탈에 대한 부분적 보상 compensation”<sup>\*</sup>으로서 원래 모두에게 속했던 자연적 유산을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누구에게 필요한지 심사할 이유가 전혀 없고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sup>\*\*</sup> 페인의 관점에 따르자면, 공유부 배당은 원래 모두에게 속했던 것을 모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며 자애의 원리와 무관하다.<sup>\*\*\*</sup>

## 2. 사유재산제도의 불가역성과 공유의 규범적 우선성의 충돌?

공유 개념을 분배 원리가 아니라 사적 소유권에 대립되는 소유 형태로 보면, 공유의 규범적 우선성은 사유재산제도와 충돌하게 된다. 공유 개념이 규범적으로 우선적인데도 어떻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사유재산권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유 개념에 규범적 우선성이 부여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의문들은 공유 개념을 분배 원리가 아니라 소유 형태로 바라볼 때 생겨나는 의문들이다. 사유재산제도를 인간 본성의 타락의 원인으로 보았던 루소는 모든 것이 공유였던 자연 상태로 복귀할 수 없는 이유를 인간 본성의

---

\* T. Paine (1796), p. 613.

\*\* 페인은 자신의 몫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 기금으로 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T. Paine (1796), p. 613.

\*\*\* T. Paine (1796), p. 612. “it is a right, and not a charity.”

변화에서 찾았다.\* 이와 같은 루소의 논변에서 공유의 우월성은 딜레마로 나타날 뿐이다.

반면에 공유부 배당론을 최초로 전개한 토마스 페인은 루소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유재산권 제도의 불가역성을 말한다. 페인의 입장은 권리와 정의의 문제를 한 축으로 하고, 물질적 부의 증대라는 결과론적 논변을 다른 한 축으로 한다. 페인은 바비프의 토지 공유제와 토지 사회화 계획에 반대했다. 페인의 논변은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의 구분을 핵심으로 하며, 인공적 소유를 실정법적 소유 형태로 보고 자연적 소유는 실정법적 소유 형태를 교정하는 분배 원리로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정법적 소유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페인의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여 후에 스펜스는 공동소유에 기초한 토지 임대제를 주장하게 된다.\*\*

사유재산권의 불가역성에 대한 결과론적 논변은 이미 『인간의 권리 2부 Rights of Man, Part the Second』(1791)에 등장한다. 페인은 상업화와 문명의 장점을 “행복과 풍부”라고 보며 비문명적 삶의 “고난과 결핍”에 대비시킨다.\*\*\* 이와 달리 『토지 정의』는 문명의 이중적인 측면, “휘황찬란한 겉모습”과 “극도의 비참함”을 대비시킨다. “문명화된 나라들에서 가장 풍요로운 인간과 가장 비참한 인간을 찾아볼” 수

---

\* Jean-Jacques Rousseau (1754), p. 161, p. 203을 보라. 페인의 관점에 대해서는 R. Lamb (2015), pp. 117~120을 참조하라.

\*\* 페인은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전환하려는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J. Keane (1995), p. 427를 보라.

\*\*\* T. Paine (1791), p. 398.

있다. 빈곤은 오직 문명의 산물일 뿐이며, “자연 상태에는 빈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명 상태는 경작, 기술, 과학의 도움으로 자연 상태보다 더 적은 토지로 “열 배 이상”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 상태로의 복귀는 인구의 1/10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가 불가능한 상태에 몰아넣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페인의 계산법이 “개간된 땅과 개간되지 않은 땅의 생산물을 10:1로”(『통치론 제2부』, § 37) 잡는 로크를 정확하게 따른다는 점이다. 그런데 로크와 마찬가지로 문명의 생산력에 주목하지만 페인은 이로부터 로크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끌어낸다. “아메리카 대륙의 거대하고 생산적인 영토의 왕이 영국의 일용노동자보다 의식주 면에서 더 못살고 있다”(§ 41)라고 단언하면서, 사유재산제도의 폐해를 눈 감았던 로크와 달리 페인은 “문명화된 삶의 이점들을 보존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 문명이 만들어낸 해악을 치유”\*\*\* 하려고 한다.

소유 정의의 관점에서의 사유재산권 불가역성은 자연적 소유 natural property와 인공적 소유 artificial property의 구분에 의하여 정교화된다. 비록 대지는 모두의 것이지만, 이러한 자연적 소유와 달리 경작에 의해 확립된 인공적 소유는 오로지 경작한 사람의 배타적 소유다. 자연적 소유는 평등하지만 인공적 소유에서 평등은 불가능하다.\*\*\*\* 경작에

---

\* T. Paine (1796), p. 610.

\*\* 같은 곳.

\*\*\* 같은 곳.

\*\*\*\* T. Paine (1796), “Author’s Inscription”, p. 606.

의해 개량된 것은 대지 자체에서 분리할 수 없고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는 서로 뗄 수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다시 공유로 다시 돌린다면 토지를 경작한 사람의 노고의 결과인 인공적 소유를 빼앗는 부정의한 결과가 나온다.

두 가지 논변을 통해 도달한 페인의 결론은 토지 공유제로의 복귀는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키며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페인이 여기에서 멈췄다면 로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페인은 인공적 소유에 대해 적용한 것과 동일한 논리를 자연적 소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페인에 따르면, 경작에 의해서 대지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이 지구를 창조한 것은 아니므로 설령 인간이 대지를 점유할 자연적 권리를 가진다고 해도 대지의 일부를 영원히 자신의 배타적 소유로 떼어 낼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누구도 경작을 통해 획득한 인공적 소유를 근거로 하여 자연적 소유 부분까지 자신의 배타적 소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사유재산제도의 불가역성은 『토지 정의』의 출발점인 공유권의 규범적 우선성과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는 둘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제3의 해결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페인의 체계는 논증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폐절할 수 없음에도 공유권이 사유재산권보다 규범적으로 우선적인 권리라면 교정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수립할 다른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

---

\* T. Paine (1796), p. 611.

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도 자연적 소유가 공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서 페인이 제안하는 것은 공유부 배당이다. 공유부를 조세로 환수하여 평등하게 배당하면, 사유재산제도를 폐절하지 않으면서도 분배 차원에서 교정적 정의가 실현된다. 이를 통해 공유의 규범적 우선성이 유지되며 어느 누구도 자연적 소유를 배타적으로 전유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공유부 배당에 대해 페인은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문제이지 결코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지원받을 권리charity rights’\*\*와 배당의 권리의 차이를 페인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적 소유의 불가역성을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했듯이 공유부 배당에 대해서도 페인은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

\* T. Paine (1796), p. 618: "But it is justice, and not charity, that is the principle of the plan."

\*\* 『통치론 제2부』의 중심개념은 ‘소유권property rights’이라면 『통치론 제1부』에서는 ‘지원받을 권리charity rights’가 중심적 개념이다. 『통치론 제1부』에서 로크는 빈민 구제를 단지 부자의 의무로만 바라보는 중세적 관점이나 공동체의 의무의 측면만을 강조했던 16세기 인문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지원받을 권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다. First Treatise, § 42를 보라. ‘지원받을 권리’ 개념은 『통치론 제2부』에도 등장하며 『통치론 제1부』의 논변을 잇는다. Second Treatise, § 70: "A man may owe (...) relief and support to the distressed."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공적 지원에 권리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보다. 비록 공공부조의 출발점은 16세기 인문주의 시기의 비베스Johannes Ludovicus Vives(1492~1540)가 1526년에 브뤼헤 시에 제출한 「빈민 원조에 관하여De subventione pauperum」라는 보고서이지만, 빈곤이나 곤란에 빠진 사람이 ‘지원받을 권리charity rights’를 지닌다는 권리론적 사고는 그보다 훨씬 후인 17세기 말 존 로크에 이르러서 비로소 등장한다.



### 3. 공유자산 임대권으로서의 사유재산권

페인은 인공적 소유에 대해서는 개선에 들인 개인의 노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스펜스는 『유아의 권리(The Rights of Infants)』(1797)에서 토지 점유가 찬탈과 정복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스펜스의 계획은 사적 소유를 다시 공유로 돌리고, 이에 기초해서 토지와 주택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출한 입찰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금으로 공무원의 봉급과 공공서비스 확충에 사용하며 남은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동등하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스펜스는 이처럼 평등하게 배당되는 수입금이 전체의 2/3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잉여 지대의 분배가 문명사회에 사는 모든 인간의 침해당하지 않는 권리”<sup>\*</sup>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정법적 소유 형태를 변경시키고 임대 형식으로 사적 이용권을 보장하는 스펜스의 계획에서는 세금이 불필요해진다.

토지 사회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스펜스의 계획은 토지 소유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상속세를 걷어 공유부 배당을 실시하려는 페인의 계획과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토지의 공동소유를 공동경영과 결합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산 공유제와도 확실히 다르다.<sup>\*\*</sup> 소유는 공동체의 것으로 하지만 토지에 대한 사적인 점유와 용익권을 인정하고 그 대신에 지대를 거둬들이는 스펜스의 방식은 아무런 마찰이 없

---

\* T. Spence (1797), p. 51, H. T. Dickinson (1982).

\*\* 자산 공유제는 잉글랜드 내전기의 윈스턴리(Gerrad Winstanley(1609~1676)와 프랑스혁명기의 바뵈프(François-Noël Babeuf(1760~1797)에 의해 대표된다.

을 경우에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보유세로 지대를 전액 환수하는 것과 토지배당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다. 또한 토지 사회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페인과 스펜스는 공통적으로 지대의 평등한 배당을 주장했다. 그와 같은 배당의 정당성을 두 사람은 모두 원천적 공유 개념에서 찾았다. 페인을 따르자면, 대지와 자연물은 원래 모든 “인류의 공동소유the common property of the human race”<sup>\*</sup>였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도입된 이후에도 일정 몫의 배당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토마스 스펜스의 임대료 배당은 토지뿐만 아니라 지식, 생태 환경, 플랫폼 등 넓은 범위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비록 실정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유자산에 대한 임대권에 기초하여 수익을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정한 발명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권리가 인류 공통의 지식에 대한 임대권에 기초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 4. 공유부 배당론이 등장할 수 없는 논변 구조

지구와 자연물은 원래 모든 인류의 공유라는 전제가 자산 공유제나 재사회화로 귀결되는 경우에 공유부 배당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자산 공유제가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

\* T. Paine (1796), p. 611. T. Spence (1797), p. 47도 참조하라.

다시 언급한다.

공유 개념이 사유재산제도와 결합하여 단지 규범적인 규제 원리로만 작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유부 배당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규범적 규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원천적 공유 개념에 의해 사유재산권의 내적 한계가 설정되어 사유재산권에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는 경우다. 둘째는 원천적 공유 개념에 의거하여 자산의 균등한 재분배가 정치공동체의 의무로 등장하는 경우다. 셋째는 공유부의 배당 개념으로 모두의 원천적 공유권이 대체되는 경우다. 첫 번째는 존 로크 등의 소유론에 나타나는 고전적 구조이며 굳이 원천적 공유 개념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사유재산제도의 통상적인 경우다. 두 번째는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1755)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산 평등주의다. 이 경우 국가는 공유부를 환수하고 배당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산재분배를 통해 자산의 평등을 재수립해야 한다. 세 번째 경우가 공유부 배당이다. 국가는 사유재산권에 의해 사적으로 전유되는 공유부를 환수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

### III. 기본소득론의 사회상

지금까지 설명한 모델은 사유재산제도와 양립가능한 공유부 배당론이며, 스펜스의 임대 모델도 사실은 그것의 하나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델에 전제된 사회상은 공유에 의해 규제되고 통제되는 사적 소유체제다. 그런데 공유의 규범적 우선성을 소유 형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공유의 실현은 배당과 분배 차원을 넘어 사적 소유관계의 전면적인 재공유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비록 원천적 공유 개념의 역사는 아퀴나스를 넘어 키케로까지 소급되지만, 사유재산제도의 폐절과 소유관계의 사회화를 의미하는 공산주의적 공유론의 출발점은 그다지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키케로나 아퀴나스는 공유와 사적 소유 중에서 어디에도 강한 우선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키케로와 아퀴나스의 소유론은 소유 형태에 관해 중립적이었던 반면에, 17세기와 18세기의 근대 정치사상의 머리에는 사적 소유 중심적인property-centered 입장과 공산주의적 공유론이라는 두 뿔이 돌아난다. 여기에서는 공산주의적 공유론 중에서 공유부 배당론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논변들을 분석해 보고 자산 공유제와 공유부 배당이 결합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은 무엇인지 따져 본다.

근대 정치사상에서 공산주의적 공유론은 두 번의 중요한 급진적 정치운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알린다. 첫 번째는 잉글랜드 내전기(1642~1651)에 스스로를 ‘진정한 수평파True Levellers’로 자칭했던 디거스Diggers 지도자 윈스턴리Gerrad Winstanley(1609~1676)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대혁명기 급진파 운동인 ‘평등한 자의 음모Conjuration des Égaux’의 지도자 바뵈프Gracchus Babeuf(1760~1797)다. 디거스 운동 그 자체는 현존 소유권 질서의 타파가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공유지 개간

운동이었지만,<sup>\*</sup> 『덤불 속의 불Fire in the Bush』이라는 소책자에서 윈스턴 리는 토지와 생산수단의 공유제가 신의 명령이며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를 수립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신에 반하는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sup>\*\*</sup> 이로부터 150년 후 바뵈프는 보다 분명하게 모든 재산의 공유를 주장한다.<sup>\*\*\*</sup> 그의 주장을 정리한 부나로티Filippo Buonarroti의 「바뵈프 독트린Doctrine of Babeuf」(1796)에 따르면 “자연은 모든 개인에게 재산을 향유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으며 “사회의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는 강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종종 공격당하는 평등을 지키고 모두의 협력을 통해 전체의 복지를 증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또는 노동의 산물을 자기 것으로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6조)이고 “진정한 사회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야”(7조) 하며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잉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는 인민의 적”(8조)이다.<sup>\*\*\*\*</sup>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와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바뵈프

\* 1649년 4월 1일 윈스턴리가 다른 네 명과 함께 서리Surrey 주의 세인트 조지 힐St. George's Hill의 공유지를 점령하고 농작물을 파종함으로써 디거스 운동이 개시된다. 그로부터 2주 후 디거스의 공유지 점령은 의회군new model army에게 보고되었고 디거스와 의회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윈스턴리는 군사령관이던 페어팩스 경Lord Fairfax에게 자신의 의도는 현존 질서의 타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고 가난한 사람이 공유지를 개간하도록 허용하면 실업, 식량부족, 범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T. W. Hayes, 1979, p. 184). 하지만 협상은 결렬되었고 윈스턴리가 의회군에 체포되어 디거스 운동이 막을 내린다(B. Sandell, 2011).

\*\* G. Winstanley (1973), p. 272. 당시의 토지 공유론에 관해서는 Petegorsky (1995), p. 139를 보라.

\*\*\* 바뵈프는 로마의 호민관이던 그라쿠스Gracchus 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졌다.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바뵈프는 '1793년 헌법'의 회복을 주장하다가 1797년 나폴레옹의 총재정부에 의해 처형되었다.

\*\*\*\* Filippo Buonarroti (1796), pp. 126~135. Babeuf (1795)에도 이미 유사한 관점이 등장한다.

는 “최초의 혁명적 공산주의자”로 평가된다.\* 「바뵈프 독트린」에 나타난 사회 모델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유제 사회다. 「바뵈프 독트린」은 공동소유와 공동경영의 토대 위에서 “자연이 부과한 노동의 무”를 강조하며 “자기 몫의 노동을 회피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3조)라고 단정한다. “노동과 이익은 모두에게 공통적이어야 한다”라는 원칙(4조)은 사회적 필요노동의 분담과 사회적 부의 분배를 연계시키도록 만든다.

「바뵈프 독트린」에는 기본소득 배당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뵈프의 모델이 공산주의적 공유제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 의무로서 노동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분석적 수준에서 따지자면 공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노동소득은 엄연히 구별된다. 공유부의 배당은 공유자라는 보편적 자격에서 나오므로 모두에게 같은 몫으로 분배되어야 하지만 노동소득은 일한 만큼 분배되어야 한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원리다. 재산 공유제를 한다고 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필요노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 공유제에서도 노동 성과에 따른 분배는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노동 성과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도 없다.\*\* 오히려 토지와 생산수단 전

\* R. B. Rose (1978), pp. 32, 332.

\*\* 맑스가 『고타 강령 초안 비판』(1875)에서 서술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완성된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의 분배 원칙은 일한 만큼 성과에 따라 분배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노동소득으로 분배된 부분과 재생산을 위한 축적분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가 아예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맑스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서도 일정한 잉여생산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을 배격할 이유는 전혀 없다.

부가 공유 자산이라면 노동소득으로 귀속된 부분과 재생산에 투자될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잉여생산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자로서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 부분은 어떤 특정인의 노동에 귀속시킬 수 없는 공유부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배하면 개별적인 소득은 일한 만큼 받게 되는 임금과 공유자로서 받게 되는 평등한 배당이라는 두 가지 원천을 지니게 된다.\*

바뵈프의 모델과 달리 재산 공유제와 공유부 배당의 결합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1889년에 출간된 벨라미Edward Bellamy의 『돌이켜보면 - 2000년에서 1887년을Looking Backward: 2000-1887』이라는 유토피아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2000년의 미국 사회는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집산주의 사회로 묘사된다. 소설에서 벨라미가 묘사하는 집산주의의 분배 원칙은 노동에 따른 분배와 평등한 배당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한편으로 국가는 총자본가로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생산물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된다. 이처럼 벨라미의 유토피아 소설에 공유부 배당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2000년에는 과학

---

\* 재산 공유에 입각한 배당은 “평등한 배당equal share”이다. 한편 맑스는 『고타 강령 초안 비판』에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적용한 분배 원리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MEW, Bd. 19, 21면)라고 말했는데, 이 원칙을 평등한 배당 원리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또한 맑스가 말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는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수당의 원칙인 기본적 필요 충족의 원칙과도 다르다. 정반대로 그것은 생산력 수준이 매우 높아서 굳이 성과에 따른 분배 원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상이한 필요에 따른 자율적 분배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 에리히 프롬이 벨라미의 소설에 붙인 서문을 참조하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00년 미국에서는 45세가 되면 은퇴하고 국가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생활한다고 서술할 때, 벨라미는 생산력의 발전이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상대화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바뵈프와 달리 노동이 의무로서 강조되지 않는 벨라미의 유토피아 소설은 재산 공유제에서도 공유부 배당과 노동 성과에 따른 분배는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조세형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노동소득이 병존될 수 있듯이 공유 자산형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과 전면적인 공유 자산형 기본소득 모델의 차이는 자산소득의 문제다.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의 경우에 공유부에서 비롯되는 수익의 대부분을 조세로 거둬들인다고 해도 자산소득에 대해 100% 과세할 수는 없다. 100% 과세는 사실상의 사회화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토지와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사회화를 가정한 자산 공유제형 기본소득 모델에서는 자산소득이 존재할 수 없고 재투자 부분과 노동소득을 제외한 수익 전부를 배당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델은 배당 규모, 즉 재분배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과 자산 공유제형 기본소득 모델의 본질적 차별성은 아니다. 과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의 재분배 규모는 공유 자산형 기본소득 모델에 근접할 수 있다. 물론 아무리 근접한다고 해도 배당 규모가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차별성은 양적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두 제도의 질적 차



별성은 분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와 운영의 차원에서 드러난다. 자산 공유제에서는 소유, 운영, 분배가 모두 공동으로 행해지지만 조세형 기본소득에서는 소유와 운영은 사적으로 이뤄지고 분배 차원에서만 공유부 배당이 이뤄진다. 페인은 『토지 정의』 제2판 서문에서 자신의 책의 집필 동기의 하나는 바뵈프의 재산 공유제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는 사유재산제도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깔려 있다.

#### 참고 문헌

Gracchus Babeuf (1795), “Manifest der Plebejer”, Kool, F./Krause, W., Die Frühen Sozialisten, Freiburg im Breisgau, Walter-Verlag Olten, 1967, pp. 114~121.

Edward Bellamy (1887/1960), Looking Backward: 2000-1887, with a Foreword by Erich Fromm, Signet,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0 (first published 1889).

Filippo Buonarroti (1796), “Analyse der Lehre Babeufs”, Kool, F./Krause, W., Die Frühen Sozialisten, Freiburg im Breisgau, Walter-Verlag Olten, 1967, pp. 126~135.

William Beveridge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London: HMSO.

J. Harris (1997), *William Beveridge: A Biography*,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 W. Hayes (1976), *Winstanley: the Digger*, Cambridge.

T. Fitzpatrick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Palgrave Macmillan.

J. Keane (1995), *Tom Paine: A Political Life*, London: Bloomsbury.

R. Lamb(2015), *Thomas Paine and the Idea of Human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 Paine (1796), “Agrarian Justice”, *The Complete Writings of Thomas Paine*, New York: Citadel Press, 1969, Vol. 1, pp. 605~624.

David W. Petegorsky (1995), *Left-wing Democracy in the English Civil War. Gerrard Winstanley and the Digger Movement*, London: Sutton Publishing LtdS (Originally published in the 1930s).

Jean-Jacques Roussea (1754), *The Social Contract, or Principles of Political Right (Du contrat social, 1762)*, V. Gourevitch (ed.),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and Other Later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B. Sandell (2011), “Gerrard Winstanley and the Diggers”, *History Review*, Issue 70, September 2011.

T. Spence (1797), “The Rights of Infants”, H. T. Dickinson (ed.), *The Political Works of Thomas Spence*, Newcastle 1982.

R. B. Rose (1978), *Gracchus Babeuf, The First Revolutionary Communist*, California: Stanford. 조공